



(서식 제2016-2호)

(개정일 : 2016. 6. 1)

#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신청서

※ 뒷면의 「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주요내용」 확인 후 작성하시고, □란에는 ✓ 표시하여 주십시오.

인 적 사 항	성 명	홍길동	회 원 번 호	J12345
	주민등록번호	46102 - 1234567	퇴 직 시 소 속 기 관	한국대학교
	자 택 주 소	Ⓢ ( 12345 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		
	자택전화번호	( 02 ) 123 - 4567	휴대전화번호	( 010 ) 1234 - 5678
	약정서수령지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자택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발송	E - m a i l	HGDong @ email.net

가 입 사 항	신 청 금 액	_____ 일억 원	지 급 종 류	즉시지급형
	지 급 기 간	<input type="checkbox"/> 5년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10년 <input type="checkbox"/> 15년 <input type="checkbox"/> 20년 <input type="checkbox"/> 25년 <input type="checkbox"/> 30년		
	지 급 주 기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매월 <input type="checkbox"/> 매년		
	지 급 일	<input type="checkbox"/> 5일 <input type="checkbox"/> 15일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25일		
	금 여 금 수령	■ 금융기관: <u>국민은행</u> ■ 계좌번호: <u>123-45-67890</u>		

■ 「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」에 따라 제정된 이행규정에 의거 귀하께서 ① 미국 거주자(시민권자, 영주권자, 조세목적상 거주자), ② 한국·미국 이외 국가(지역)의 조세목적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확인서(개인용)를 작성(하단 별지)하여야 합니다. ※ 해당여부 ✓ 표시 : □ 해당  미해당  
<미해당자> 본인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, 추후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9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 본인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.

※ 위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정보가 국세청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.

■ 본인은 뒷면의 분할급여금 주요내용(변동 급여율 적용, 계약변경, 중도해약 등)을 확인하였으며, 귀회의 정관과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신청합니다.

2016 년 6 월 1 일

신 청 인    홍길동    홍길동 (인)

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

# 분할급여금 주요내용

■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퇴직급여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, 회원의 희망에 따라 퇴직급여금 중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### 1. 신청자격

- ▶ 일반회원으로서는 정년·명예·임기만료·상병·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한 교직원
  -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분할급여금 신청자격 상실됨
  - 퇴직 청구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탈퇴회원은 신청이 불가함

### 2. 신청방법

- ▶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신청가능 금액이 기재된 급여청구서와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신청서 각 1부를 본부 또는 지부로 송부

### 3. 신청금액

- ▶ 장기저축급여 세후 퇴직급여금 이내에서 최저 5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
  - 세후 퇴직급여금 전액 신청시 100만원 미만 잔액은 지급
  - 퇴직 시 일부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일부는 분할급여금으로 신청 가능
  -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신청과 동시에 퇴직생활급여 자동전환 불가 (단, 목돈급여는 퇴직생활급여 자동전환 가능)

### 4. 지급종류 및 지급방법

지 급 종 류	· 즉시지급형 : 원리금 균등 분할지급
지 급 기 간	· 5년 / 10년 / 15년 / 20년 / 25년 / 30년
지 급 주 기	· 매월 / 매년
수 령 일	· 5일 / 15일 / 25일

### 5. 급 여 율

- ▶ 시중 금리 변동에 따라 급여율이 조정될 수 있음

### 6. 세 율

- ▶ 본인의 퇴직급여금에 적용된 세율과 동일한 세율 적용

### 7. 계약변경

- ▶ 1회차 급여금 지급 이전에 한하여 계약조건(지급기간, 지급주기, 지급일) 변경 가능
  - 1회차 급여금 지급 이후에는 최초 계약조건 변경 불가

### 8. 중도해약

- ▶ 전체해약만(부분해약 불가) 가능하며, 해약수수료는 없음
- ▶ 해약한 이후 분할급여금 재가입 신청 불가

### 9. 수급권자 지정

- ▶ 회원 사망시에는 급여금 전액이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지급
- ▶ 배우자 및 직계비속, 형제자매에 한하여 수급권자(1인)를 지정할 경우 수급권자에게 지급
  - 지정(변경)신청서(본회양식), 회원의 인감증명서, 회원과 수급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첨부하고, 신청서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

### 10. 급여금 보장

- ▶ 특별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법(제13조)에 의거 급여금의 안정성 보장

### 11. 기 타

- ▶ 급여율 변경 및 급여금 지급 안내 등 제도관련 중요 내용은 휴대전화의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문자 전송됨
- ▶ 주소, 연락처 등 인적사항(개인정보)이 기존 등록된 정보와 상이할 경우 자동 변경됨

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세부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,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, E-mail 등 연락처가 변경되시면 회원콜센터(1577-3400) 또는 홈페이지([www.ktcu.or.kr](http://www.ktcu.or.kr)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